

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

※어두운 난()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14일	
청구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	전화번호: 휴대전화:		
	청구권자	[]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[]대리인		보호자가 여럿인 경우 ()명	
	입금계좌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	
통지방법		[]서면 []전자우편 []문자 메시지 []기타()			
미지급 아동수당 내역	사망자(수급아동)		주민등록번호		
	사망일	청구액	미지급기간 ()개월 천원 [년 월 - 년 월]		
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(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)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연락처	대표자 선정	
			전화번호: 휴대전화:	선정일	서명 또는 인
			전화번호: 휴대전화:		

「아동수당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아동수당을
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(대리청구인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기재요령	1. 청구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전화번호,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. 2.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. 3.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던 사람(보호자)입니다. 4.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"대표자 선정"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.
첨부서류	1.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3.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4.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)
업무담당	1. 인정기준 부합 여부: []부합 []미부합 2.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: (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